



1535 / 25JAN18

Electronic Miscellaneous Document Receipt



Passenger Name BAIK/JONG MUN MR
 Document Number 1804550545561
 Reason for Issuance Code C (BAGGAGE)

구권정보 Coupon Information

Coupon (1)

Reason for Issuance Sub-code Description OIE : International / Domestic Excess Baggage
 Issuing Carrier KE
 Origin Tashkent/TAS
 Destination Incheon/ICN
 in Connection With Document Number
 Excess Baggage 3 PC
 Rate per Unit USD 400.00
 Service Remarks @KHY7513 23JAN-CHARGE AND KEEP

분임안내 Fare Information

Fare Calculation TAS KE ICN UZS 3258552
 Remarks 3PCS EXTRA
 Endorsement/Restrictions
 Base Fare Amount UZS 3258552.00
 Equivalent Fare Paid -
 Tax/Fee/Charges Amount -
 Total Document Amount UZS 3258552.00
 Form of Payment Cash
 Conjunctive Ticket Number -
 In Connection with Document Number -
 Date of Issue / Place of Issue 23JAN18/73390284/TAS CTO
 Original Ticket Number -
 Exchanged Ticket Number -

본 증서에 의해 환불이 행하여지는 경우, 실제 환불금은 상기에 표기된 금액과 상이할 수 있으니 대한항공서비스센터나 지점 또는 발권한 대리점을 통해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매 후 본 증서의 결제 수단 변경은 불가합니다.

발행조건 Terms and Conditions

- 본 증서에 의해 운송이 행하여지는 경우, 본 증서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항공권으로 교환되어야 하고 이러한 교환은 운송인의 제반 규정에 따라 출발 전에 요구 될 수 있습니다.
- 본 증서가 수하물에 대하여 발행된 경우, 본 증서는 1955년 헤이그 의정서 또는 동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 제4조에서 명시된 수하물표 또는 1999년 몬트리올 협약 제3조에서 명시된 수하물 식별표와는 별개이므로, 승객은 항공권과 수하물표를 별도로 소지하여야 합니다.

3. 본 증서는 양도될 수 없으며, 본 증서가 분실되거나 도난된 경우 또는 본 증서에 명의가 기재된 자 이외의 제삼자에 의해서 본 증서가 제시되어 사용된 경우 발행인, 운송인 또는 항공운송 이외의 기타 서비스 제공자는 본 증서의 구입자나 본 증서에 명의가 기재된 자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본 증서와 이에 의해 제공되는 제반 운송 및 서비스는 발행인, 본 증서를 수취한 운송인 및 본 증서와 교환으로 발행된 항공권에 따라 운송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인의 현재 유효하게 적용 되는 태리프, 운송약관 및 제반 규정에 따르며, 항공운송 이외의 기타 서비스가 알선, 공급 또는 제공되는 국가의 법률 및 관련 계약 조건에 따라 행하여집니다.
5. 본 증서를 발행함에 있어서, 발행인은 본 증서에 기재된 운송을 제공하는 운송인 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 알선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대리인에 불과하며, 그러한 운송인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야기하는, 또는 그러한 운송인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운송 또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한 결과 혹은 본 증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 발생하는 일체의 분실, 손해, 파손 또는 지연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6. 본 증서에 따라 운송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운송인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발행인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얻은 후 본 증서에 따라 운송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을 가집니다.
7. 본 증서에서 말하는 발행인, 운송인 또는 서비스 제공자란 해당 발행인, 운송인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소유회사 내지 개인,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 및 본 증서에 의한 운송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된 일체의 관련자를 포함합니다.
8. 본 증서에 명의가 기재된 자 또는 그러한 자를 대신하여 본 증서를 구입하는 자가 본 증서를 수령했을 경우에는 상기의 제반 조건에 대해 동의하고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한항공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260 (공항동) | 대표이사: 우기홍 외 2명 | 사업자등록번호: 110-81-14794 |
<http://www.koreanair.com>
